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6차 법제사법위원회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신고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동시 신고 의무화 등〉
■ 임오경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1327호)

2024. 9.

법 제 사 법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박 동 찬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임오경 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7. 3.
3. 회 부 일 : 2024. 7. 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 정인이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8명에 달함.

이러한 사건의 발생에는 양형강화에도 입양 후 관리 등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.

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중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의 신고를 강화하고,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과 사법경찰관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장출동 및 조사, 응급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만들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 및제3항).

Ⅲ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개정안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는 물론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하고, 신고를 받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가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제2항 및제3항).

현행	개정안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생략)	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<u>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</u> 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·도,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</u> ----- ---
1. ~ 26. (생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와 수사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

현행	개정안
③ (생략)	<u>동학대전담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,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,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</u>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□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행정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려는 취지인 것으로, 이는 신고의무 강화를 통하여 보다 철저하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현장 출동 및 조사 등에 적극적 지원을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촘촘한 현장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□ 다만, 현행법 상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동시 신고의무를 부과할 경우 한 곳에만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어 신고의무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될 수 있고,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중복하여 신고함으로써 오히려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상호 동행요청 및 현장동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보이고,

현행법 상 신고의무자 현장출동 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 통지하도록 한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6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

제11조(현장출동)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안 제10조제3항은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의 장에게 현장출동 및 보호 조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.

현행법 제10조제4항은 신고의무자의 신고 접수시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·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·도, 시·군·구 및 수사기관에 동시 신고를 전제로 신고 받은 두 기관 모두에게 현장출동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 출동 및 대응 행정력 동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. 다만, 현행법 제11조제1항은 현장출동시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현장출동)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(이하 “아동학대전담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□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법무부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공적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현재 실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학대예방 경찰관(Anti-Abuse Police Officers, APO) 등을 통하여 지자체 및 수사기관 간 협력 및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,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신고 지연 및 신고 위축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-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, 안 제10조제2항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시 동행출동 및 지자체(아동학대전담공무원)와 경찰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. 양쪽 기관에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신고의무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, 안 제10조제3항은 현행법에서 신고의무자의 신고 접수 시 반드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와 수사기관에게 조치 관련

적극적인 지원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- 법원행정처는 안 제10조제2항에 대해 현행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이 각기 다른 시기에 중복해서 이루어지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아동 등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고, 안 제10조제3항의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위하여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 간 유기적 업무처리 방식 등에 관하여 법령상 추가적인 규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.

문 의 처
02)6788-5059